

2025 세법학 II - ② 추록

2025년 7월 2일 발행
정정문 지음 / 상경사 출간

- 이 추록은 『세법학 II - ②』 제26판 1쇄에 적용되는 수정사항입니다.
- 이 추록은 출간 후 발견된 몇 가지 오류수정과 개정된 법령 등을 반영하였습니다.

I . 오류수정사항

P	행	종전의 내용	고침
145	上 8	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비교	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와 가업승계시 증여세 납부유예의 비교
224	上 15	중소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	중소기업은 수도권 밖
272	上 4	보상계약의 체결일이 속하는 다음 달 말일까지	보상체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
	下 8	10% 감면	15% 감면

● p.127 上 3~10행. 아래 내용으로 교체

(4) 경력단절 근로자 등

1) 경력단절 근로자 :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자를 말한다.

㉠ 임금을 목적으로 같은 기업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*한 후 결혼·임신·출산·육아·자녀교육·가족돌봄의 사유로 퇴직하였을 것

* 경력단절 근로자의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었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.

㉡ 위 ㉠에 따른 사유로 퇴직한 날부터 2년 이상 15년 미만의 기간이 지났을 것

㉢ 내국인의 최대주주(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) 또는 그와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

2) 북한이탈주민 :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북한이탈주민

2. 특별재난지역 고향사랑기부금 적용기간 구체화

<개정내용>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고향사랑기부금의 세액공제율을 30%로 상향 적용하는 대상을 ‘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부한 경우’로 정하였다.

종전	개정
<신설>	☐ 특별재난지역 고향사랑기부금 적용기간 규정 ☐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해 공제율 상향 적용

<적용시기> 이 규정은 2025년 3월 14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기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🔴 p.235 下 7~6행. 아래 내용으로 교체

*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방자치단체에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부한 경우에는 ‘30%’로 한다.

🔴 p.236 上 2행. 아래 내용으로 교체

<개정내용>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방자치단체에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...

3.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 공포에 따른 시행일 확정

P	행	종전의 내용	고침
116	下 1	2025년 3월 #일	2025년 3월 <u>14</u> 일
236	上 4		
269	下 4		
291	上 1		
453	上 7		
	上 8		